

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제대학원 학사내규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특례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자 범위) 특례조치 대상자는 특례조치 시행일 현재 국제대학원 학사내규 제41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학위논문 미제출, 영어능력평가 또는 졸업종합시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구수료자로 한다.

제3조(특례제외자의 범위)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

제4조(특례신청) 특례신청은 1회에 한하며,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신청 시기를 정한다. 특례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구비서류) 특례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례재입학 청원서(서식1호) 1부.
2. 성적증명서 1부.

제6조(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 재학연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신청자의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은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제7조(등록) ① (현행와 같음)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특례신청 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 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특례신청 학기에는 재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 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특례허가 및 취소) ① 특례재입학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례가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례자는 휴학할 수 없다.

③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한다.

제9조(학적관리) 재학연한 특례조치 신청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학적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록, 관리한다.

0000학년도 0학기 재학연한 특례신청자

제10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국제대학원 학사내규 등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